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283
----------	------

2023년 12월 19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0월 10일, 남궁역 의원(찬성자 29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21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23년 12월 19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남궁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중 제3호 ‘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’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중 ‘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57조제1항제5호)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57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시 고려사항에 “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

[표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.
1.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	1. ~ 4. (현행과 같음)
2.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·가스·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	
3.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	
4.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	
<u><신설></u>	<u>5.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</u>
5.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-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제1항¹⁾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취지 및 범위에 부합한다 할 수 있음.
- 한편, 안전취약계층의 범위와 관련해서 현행 조례 제2조제13호에 따르면, 노인,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
- 이들 계층의 경우 신체 및 판단 능력이 약하고 상당수가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활동에 취약할 수 있는바,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- 다만, 현행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보면, 노유자 시설 피난기구 설치, 소방·가스·전기 시설 등의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, 취약지역 환경개선,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를 위

1) 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.

한 마스크 등의 용품 등 지원사항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,

- 개정안의 ‘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’의 경우 그 범위와 관련해 상당히 폭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원 품목 선정 시 시장의 합리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요구되어진다고 하겠음.
- 참고로,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·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 시 119 연계 등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재감지기, 활동량감지기, 출입감지기,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음.

□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

○ 사업내용 :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설치 및 응급상황 조치

-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정보 전송하는 댁내장비 설치
- 댁내장비 시스템을 통해 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조치
-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·연계

○ 운영방법 : 지역센터에서 댁내장비 운영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가구 모니터링

- 화재발생 : 게이트웨이 통해 119자동신고 및 응급관리요원에서 문자 발송
→ 상황파악 후 조치(소방대원, 응급관리요원)
- 응급호출 : 게이트웨이 또는 응급호출기 누름→119신고 및 응급관리요원에서 문자 발송→상황파악 후 조치(소방대원, 응급관리요원)
- 활동량 미감지 : 디지털돌봄시스템으로 활동 미감지 정보 전송→응급관리요원 상황 파악(전화, 영상전화 등) 및 조치

※ 설치장비 (1set): 게이트웨이, 활동량감지기, 화재 감지기, 출입문 감지기, 응급호출기

○ 맥내장비

구분		기능	
 게이트웨이		- 원격 생활유용정보 음성 정보 제공 - 응급상황발생 시 119자동신고 기능 - 119에서 응급발생 신호를 받으면 대상자 주소 등 확인 - 감지기들로부터 센싱 정보를 원격으로 저장·관리	
 화재감지기	 활동량감지기	 출입감지기	 응급호출기
연기감지 시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를 무선통신으로 전송	대상자의 활동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를 무선통신으로 전송	출입문 개폐 시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 무선통신으로 전송	응급호출기 버튼 누를 시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 무선통신으로 전송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궁역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28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0일

발 의 자: 남궁역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남창진,
민병주, 박수빈, 박춘선,
박환희, 봉양순, 신복자,
옥재은, 유만희, 윤기섭,
이병운, 이상욱, 이영실,
임춘대, 최민규, 허 · 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9
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중 제3호 ‘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’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중 ‘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57조제1항제5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	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5.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</u>
5. (생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문 서 번 호

2023081000000004

비 대 상 사 유 서

요 청 인 : 남궁역 의원

담 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 수 일 : 2023.08.10.

회 신 일 : 2023.08.10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제1항제5호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3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57조제1항제5호	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	1,157,130

자료: 2023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주 무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